

대기관리권역법 및 하위법령안 3단 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p>	<p>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p> <p>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p> <p>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p>		<p>제2조(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자동차를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p> <p>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p> <p>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p> <p>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p> <p>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p> <p>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p> <p>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p> <p>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자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p> <p>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p> <p>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p>	<p>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p>	<p>시행령 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3. 도시·군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p>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는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p>	<p>시행규칙 안</p> <p>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p>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p>	<p>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p>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6.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p>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1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국토교통부2차관·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2. 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p> <p>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요청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실무위원회) ① 대기관리권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시·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보건환경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p> <p>4.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5. 제7조제9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p> <p>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p> <p>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p> <p>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p> <p>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임이 결정된 사항</p> <p>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시행령 안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9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p>	<p>시행규칙 안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예측한 내역서</p> <p>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p> <p>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p> <p>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p> <p>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④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p>		<p>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0조(사업장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p> <p>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16조(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p> <p>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p> <p>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p>		<p>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계획</p> <p>2. 지역배출허용총량</p> <p>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p> <p>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p> <p>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p>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p> <p>제14조(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협의 사항) 시·도지사가 총량관리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도의 대기관리권역 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시·도별 시행계획상의 점오염원 삭감 계획과 할당량의 비교 결과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p>	<p>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p> <p>제11조(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량</p> <p>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p> <p>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p> <p>5.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감축 계획과 그 투자계획</p> <p>6.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p> <p>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① 영 별표 3 제3호다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p> <p>② 영 별표 3 제3호다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3과 같다.</p> <p>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p> <p>제17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18조(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p>	<p>제12조(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3.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p>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는 법 제17조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부터 적용한다.</p>	<p>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정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p> <p>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p>	<p>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양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량에 더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p> <p>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 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p>	<p>제1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減量)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계수는 별표 5와 같다.</p>	<p>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p> <p>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p>	<p>제15조(징수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이나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제2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제16조(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p> <p>제17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영 제17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p> <p>④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해</p>		<p>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택을 줄 수 있다.</p> <p>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p> <p>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p> <p>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규칙 안</p> <p>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p> <p>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p> <p>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 계획</p> <p>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p> <p>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p> <p>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p> <p>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에서</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p>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p>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p>		<p>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29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받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p>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p>	<p>제18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p>	<p>은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다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p>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19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p> <p>①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고시하여야 한다.</p> <p>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p> <p>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p>	<p>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 차이의 정도</p> <p>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p> <p>1. 해당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정도</p> <p>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p> <p>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p> <p>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p>하여 고시한다.</p>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2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 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30조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이란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官給)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32조(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p>	<p>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p>	<p>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제22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p>	<p>한한다)</p> <p>3. 고기·생선구이 음식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명령</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기준 및 인증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1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된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증을 받은 경우</p> <p>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가정용 보일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3.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p>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②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p> <p>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4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정용 보일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가정용 보일러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5조(가정용 보일러 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p> <p>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p>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가정용 보일러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p> <p>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p> <p>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p> <p>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p> <p>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p> <p>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 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7장 보칙</p> <p>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제6장 보칙</p>	<p>제6장 보칙</p> <p>제36조(출입·검사 등) 법 제4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의한 허가·신고·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p>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p>	<p>제37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만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5.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6.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7. 법 제21조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8.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10.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문</p> <p>12. 법 제49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 및 제11호의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기본계획의 확정 및 관보 고시 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접수</p> <p>8.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p> <p>9.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p> <p>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p> <p>1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p> <p>1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p> <p>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p> <p>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減量)</p> <p>15.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16.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확인</p> <p>1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p> <p>18. 법 제49조제2항(제17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징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검토(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검토 4.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 5.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24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5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p>	<p>제38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7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p>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2020년 1월 1일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제22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경유자 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제31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p>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p>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p> <p>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p>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p> <p>제3조(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중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비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p> <p>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p> <p>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p> <p>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p> <p>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p> <p>4.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p> <p>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p>	<p>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p> <p>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으로 한다.</p> <p>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p> <p>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p> <p>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p>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p>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p> <p>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p>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제9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이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연소 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측정기기의 설치, 관리방법 및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 6)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최근 연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배출구

-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

나. 가목 후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고

1. 같은 사업장에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 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유량계·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하며,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부착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제1호 가목의 부착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 1)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2)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 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 4)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가동중지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량계

- 1)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

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64÷22.4
먼지	30분 평균농도(mg/Sm³)×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다. 연료유량계에 의한 방법

$$\text{월당 연료사용량} \times \text{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times (1 - \text{방지시설 효율}/100)$$

비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적용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3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이하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으로 한다.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위반계수(제14조제2항 관련)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징금 산정방법(제16조 관련)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질소산화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황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먼지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2	1	1.5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 = (\text{연간 배출량} - \text{배출허용총량}) \div \text{배출허용총량} \times 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나. 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의한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제외한다)
 - 다.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법 제49조제3항	60	80	100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30	100	300
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2호	50	75	100
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758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황산화물(S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배연탈황 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열병합발전	25(6) 이하	20(6)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25(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5(4) 이하	25(4) 이하	
(나) 열병합발전	50(4) 이하	3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20(15)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열병합발전			
①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②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50(6) 이하	
④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⑤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설	35(6) 이하	15(6) 이하	
②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10(15)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20(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다) 소각시설	10(12) 이하	5(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연료 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인 시설	5(12) 이하	5(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00(13) 이하	50(13) 이하	
(2) 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50 이하	35 이하	
(3) 그 밖의 시설	40 이하	1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50(4) 이하	30(4) 이하	

(2)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3)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50 이하	35 이하
(4)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0 이하	35 이하
(5) 그 밖의 시설	10 이하	1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증질유 분해시설의 일 산화탄소 소각보일러		
② 건식 황산화수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④ 습식 황산화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2) 그 밖의 시설	50 이하	50 이하

2. 질소산화물(N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저녹스 (NO _x) 버너,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15(6) 이하	10(6) 이하	
(나)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 내연기관 포함)	50(6) 이하	1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10(4) 이하	
(나)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50(4) 이하	1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0(4) 이하	5(4)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5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7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이외의 시설	40(4) 이하	20(4) 이하
(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0(4) 이하	40(4) 이하
(라)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90(6)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 0.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13) 이하	135(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3)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3) 이하	8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4) 그 밖의 시설	70 이하	6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	100 이하	75 이하
(3) 그 밖의 시설	100 이하	6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라)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 순산소 사용시설	70 이하	70 이하
(2) 그 밖의 시설	200 이하	80 이하

마)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바)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①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0(4) 이하	60(4) 이하
② 그 밖의 시설	4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사)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1) 배소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소결로	45 이하	30 이하
(2)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 이하	5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4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여과집진 시설, 전기집진 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6) 이하	2(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15)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7(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2(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7(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6) 이하	9(6)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6) 이하	9(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5(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14(4)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4(12) 이하

비고

-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 억제시설은 최적방지시설로 본다.
-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의 제2호가목 비고 4 및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비고 4의 다, 타 및 비고 5의 하, 거는 제외)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 가. 초기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 나. 최종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 기준농도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 각 호의 표 2)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text{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text{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times \text{할당계수단위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있는 배출시설

- 초기 할당계수(초기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초기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초기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최종 할당계수(최종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종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최종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한다.

비고

-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의해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목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4. 3호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배출시설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text{초기 할당 계수} = \text{최종 할당계수}$$

3. 할당계수단위량

할당계수단위량 산정 시에는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한다.

비교

1. 시설 개선, 연료 변경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가동중지기간을 제외하고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동중지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중지 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다.

$$\text{할당계수단위량} = \frac{\sum \text{최근 5년간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등}}{5 - (\text{가동중지기간 개월수}/12)}$$

2. 시설 증설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연료·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 중 연료·원료사용량의 증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증가는 제외한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 예상량 등을 고려한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 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비교

1. "단위 배출량"이란 해당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연도의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2. "할당계수단위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3.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전년도에 시설 미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동된 최근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배출허용총량의 산정·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5조제2항 관련)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중 오염물질 발생량란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text{방지시설 적용 효율(\%)} = (\text{발생량} - \text{배출량}) \div \text{발생량} \times 10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0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零)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365를 곱한 값으로 하고, 폐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零)으로 한다.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도가 할당받은 사업장부문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 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비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나목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를 적용하여 검사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제31조 관련)

1.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2. 배출가스의 항목별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질소산화물(NOx)	20(0) ppm 이하	40(4) ppm 이하	60(4)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 ppm 이하	120(4) ppm 이하	120(4) ppm 이하

3. 열효율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열효율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비고

1. 기체연료 1등급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2. 기체연료 2등급 및 액체연료 가정용 보일러는 액화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는 환경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등급 기체연료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38조 관련)

업무 내용	보고횟수	보고 기일	보고자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결과	수 시	조사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현황	연 1회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수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수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제한한 사항	수 시	허가제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 허용총량의 할당 현황	연 1회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 허용총량의 이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증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 허용총량의 조정 현황	수 시	조정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 허용총량의 감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1. 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2.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 현황	수 시	취소 및 폐쇄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13.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현황	수 시	체결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목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내용	수수료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적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적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00,000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상 호 (사업장명칭)					종 별	종			
성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일 일 조 업 시 간				
연 료 사 용 량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오염물질 종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허가조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직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시료채취·분석 및 모델링기간 제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변경내용	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변경	방지시설	방지시설		용량	수량	방지시설		용량	수량	
오염물질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그 밖의 변경										
변경신고 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에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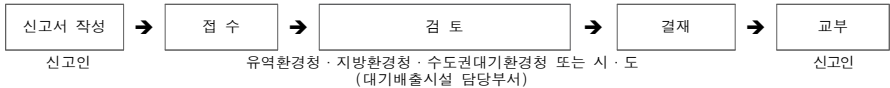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직전 5년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해당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50,000원
------	---	----------------

처리절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배출허용총량 판매 사업장명			
배출허용총량 구매 사업장명			

이전내용	오염물질 종류	대기환경 영향권역	이행연도 (사용연도)	이전량 (kg)	배출허용총량 번호 (시작번호~끝번호)	이전가격 (원/kg)

* 배출허용총량 번호: 발행연도, 대기오염물질 종류, 사업장 등의 정보를 일련번호로 구성한 것으로 할당시 부여된 것

이전합의 일시		
판매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구매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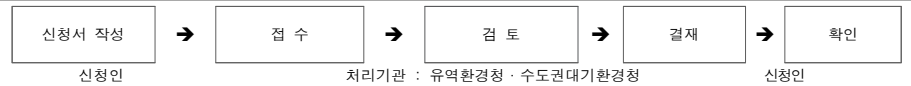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제1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인

(제2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세입징수관:

직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제3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제4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 부 서(한국은행용)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2.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 허용총량 (kg/연)	배출량 (kg/연)	초과 배출량 (kg/연)	지역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위반횟수

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_____ 원(A)

나.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배출량-배출허용총량) : _____ kg(B)

다. 지역별 부과계수 : _____ (C)

라.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_____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_____ (E)

바.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_____ (F)

사. 총량초과과징금 = (A)×(B)×(C)×(D)×(E)×(F) _____ 원

가산금: 총량초과과징금×3/100 _____ 원

납기 후 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_____ 원

작성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작성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증명서		
차량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명	연 식
	주 소	전화번호
배출가스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기관명	검사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실적		
부착 및 개조·교체 일자	금 액(만 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종류
부착 및 개조·교체 업체명	소 재 지(전화번호)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자동차	①등록번호		②차대번호		
	③최초등록일		④연 식		
	⑤차 종(장치인증번호)				
신청인	⑥성 명		⑦생년월일	⑧전화번호	
	⑨주 소				
확인 사항	⑩확인일자(년월일)			⑪확인자 성명	
	⑫확인결과			⑬주행온도분포 (C, %)	⑭종합판정
	구 분	구조변경시	확인검사시		
	매연(%)				
	출력/회전수 (ps/rpm)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관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50px; height: 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작성방법					
<p>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습니다.</p> <p>2. ⑥란부터 ⑨란까지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습니다.</p> <p>3. ⑩란은 실제 확인자의 성명을 적습니다.</p> <p>4. ⑫란은 구조변경시와 확인검사시로 구분하여 측정치를 적습니다.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p> <p>5. ⑬란은 자기진단장치(OBD)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적습니다.</p> <p>6. ⑭란은 주행온도분포 및 확인결과에 따라 적합 또한 부적합으로 적습니다.</p>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9호서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 (팩스:)	
		제조공장·사업장	(전화:) (팩스:)	
신청내용	설립 연월일		자본금 (억원)	
	대상 제품		상표명(모델·브랜드)	
	용도·제공 서비스		연간 생산량(판매 예정량)·이용고객 실적	
	연간 총매출 (해당사업장)	전년도 (억원)	신청 제품·서비스 매출	전년도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p>				
구비서류	<p>1. 해당 제품·서비스의 환경성 관련 자료</p> <p>2. 해당 제품·서비스의 품질 관련 자료</p>		수수료 없음	

(뒤쪽)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9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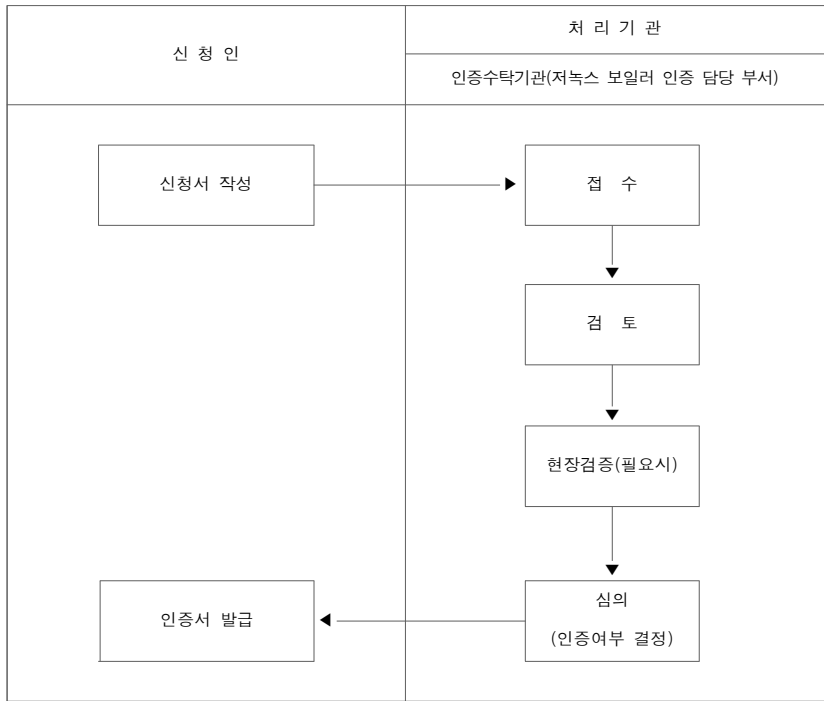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인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 (팩스:)
		제조공장·사업장	(전화:) (팩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애초 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의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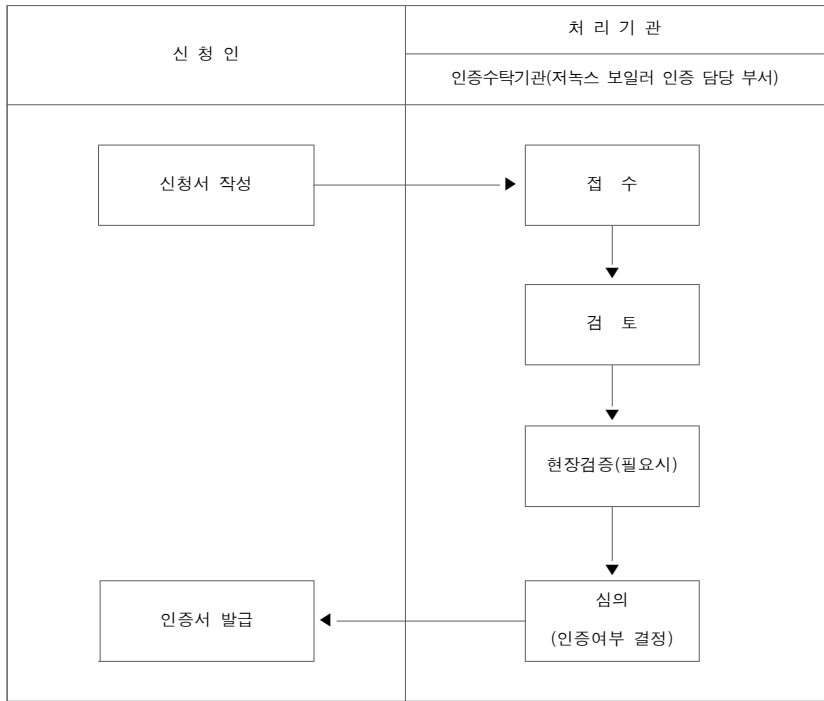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동일한 가정용 보일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3.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20.4.3>

제 호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공장·사업장 소재지:
5. 대표자 성명:
6. 대상 제품:
7. 상표명 / 용도·제공서비스:
8. 인증 기간:
9. 인증 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보일러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인증 이력]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